



# 행정기본法, 이래서 만듭니다.

국가법령의 90% 이상(4,400여 건)을 차지하는 행정법령은 국가 활동의 근간이 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민사·형사·상사 분야와 달리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사·공통 제도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의 형평성을 해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혁신을 하려 해도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정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명문화된 법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민 입장에서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빈번한 쟁송이 제기됩니다.



# 행정기본法,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헌법, 판례와 학설로 정립되어 온 행정의 일반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 행정절차법 등에 입법공백 상태로 있는 실제적 사항을 보완합니다.
- 개별 행정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체계화합니다.

## 기본법 체계도

| 총 4개의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 |

### 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 (§8-§13)
- 처분의 취소·철회 근거 마련 (§18-§19)
- 제재처분 행사기한 명확화 (§23)

### 2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 신법·구법의 적용기준 명확화 (§14)
- 유사·공통제도 체계화 (§24-§28, §32)
-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마련 (§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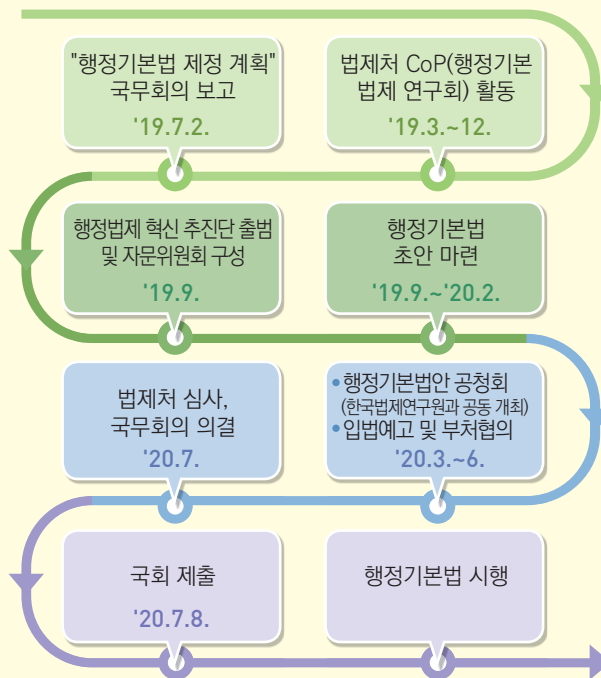
### 3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명시 (§4)
-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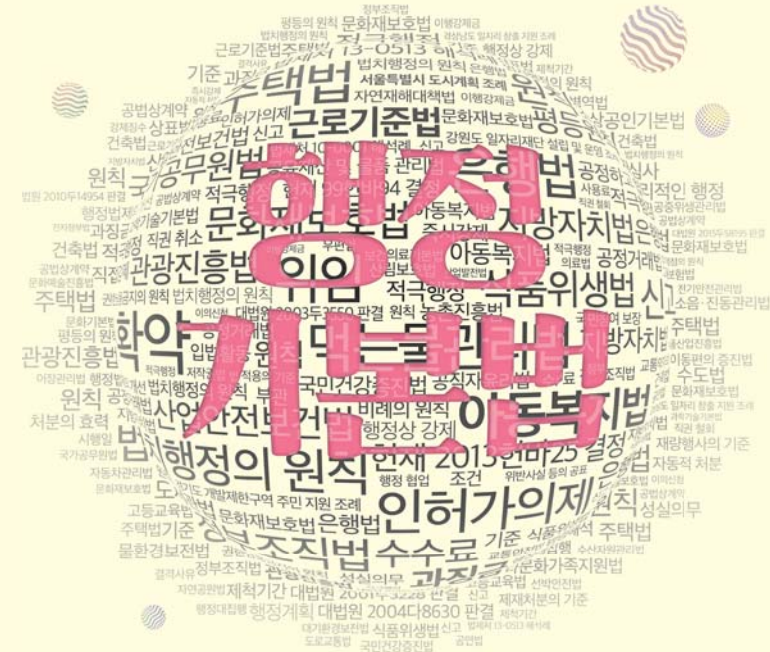
### 4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 확대

-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 마련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확대 (§37)
- 처분의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38)

## 주요 일정



# 행정기본법이 제정됩니다!



행정의 법 원칙과 기준을 세웁니다.



1

##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여 권리보호에 기여합니다.

### 행정의 법 일반 원칙이 명문화됩니다.

헌법상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신뢰보호·신의성실·부당결부금지·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 명문화됩니다.



### 처분의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에 대한 요건과 한계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 제재처분의 행사기한이 명확해집니다.

인허가 취소·정지·철회와 같은 제재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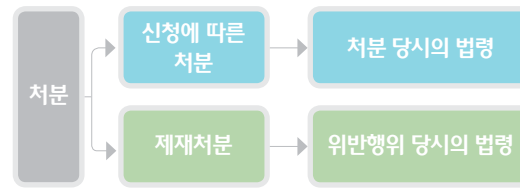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2

##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집행상 혼란을 해소합니다.

### 법 적용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신법·구법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 유사·공통 법 제도를 체계화합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 등 유사·공통 제도가 체계화 됩니다.

### 새로운 형태의 행정작용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의 첨단·전문·다양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등 완전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처분 근거를 제시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3

##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과 행태가 근본적으로 전환됩니다.

###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가 명시됩니다.



###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이 명확해집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제출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되,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문화 됩니다.

4

## 법령을 국민 중심으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만들고 해석해드립니다.

### 행정기관의 입법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을 만들 때는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의 의미를 알기 쉽게 잘 만들도록 기준이 제시됩니다.

###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리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됩니다.